공산품 품질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산품에 대한 품질표시, 품질검사 및 품질관리에 대한 등급제를 실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의 표시) 일반소비자가 섬유제품, 합성수지가공품, 전기기계기구, 고무제품, 유류 및 유지제품, 시멘트가공제품(블록, 벽돌, 기와)에 대한 품질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이하"품질표시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상품의 제조업자(가공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품질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표시의 기준등) 상공부장관은 품질표시의 기준에 관하여 상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중 필요한 것을 상공부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멘트 가공품(블록, 벽돌, 기와)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성분, 성능, 규격, 용도, 저장방법, 기타 품질에 관한 사항
2. 표시의 방법
3.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4조(표시에 관한 명령) 상공부장관은 품질표시상품의 제조업자의 전조에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품질표시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조(표시제거의 금지) 품질표시 상품의 판매업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표시의 표식을 제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검사상품의 지정등)

①품질표시상품중 인명의 피해나 화염의 발생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가 있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이하 “검사지정상품”이라 한다)은 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결과 합격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검사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품질관리의 등급조정)

① 상공부장관은 품질표시상품중 특히 품질향상을 위하여 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이하 “등급조정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조업자로 부터의 신청에 의하여 그 상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등급을 조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조정의 기준구분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등급의 등록) 등급조정상품의 제조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의 조정을 받는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9조(등급의 재조정)상공부장관은 등급조정상품에 관한 품질관리의 상태가 조정된 등급과 합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등급의 재사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의 면제)

① 등급조정 상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검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제11조 (보고, 조사)

① 상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표시상품 지정상품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및 등급조정 상품의 제조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공장, 점유, 사무소 또는 창고에서 당해공산품 기타 서류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산품품질관리심의위원회)

①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공사품품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품질표시상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령으로 정할 사항

3. 등급사정상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사정 및 재사정에 관한 사항

5. 검사지정상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상공부장관이 공산품품질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권한의 위임) 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부출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부금에 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표시를 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 하고 판매한 자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금지된 상품을 판매한 자

제16조(동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부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기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제17조(양부규정) 법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이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부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금을 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